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8월 일
제 출 자 : 김영래 의원 외6명

1. 제정이유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라. 교통안전교육(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9.8. . ～2019. 8. .(5일간)

5.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제17조,「도로교통법」 제93조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 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만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성주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 교통비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고령운전자 현황

구분	인구수(명)		고령운전자(명)	
	만70세~74세	만75세이상	만70세~74세	만75세이상
성주읍	436	1,299	375	193
선남면	428	869	229	103
용암면	276	633	93	78
수륜면	281	689	89	73
가천면	145	429	30	34
금수면	91	267	22	16
대가면	169	438	62	48
벽진면	259	568	91	45
초전면	316	759	13	15
월항면	265	587	34	57
합 계	2,666	6,538	1,038	662

*만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 1,700명(인구대비18.5%)

각시군별 고령자 연령 및 지급금액 현황

시 군	연령	지원금액	비 고
경상북도청	65세	별도 정함	
경북 포항시	70세	예산범위내	
경북 문경시	70세	예산범위내	
경북 영천시	70세	예산범위내	
경북 구미시	65세	예산범위내	
대구 달서구	65세	예산범위내	
전북 임실군	70세	20만원	상품권
전북 남원군	70세	예산범위내	
전북 무주군	70세	예산범위내	
충남 청양군	70세	예산범위내	
경남 합천군	70세	예산범위내	

」※지원금액 : 10만원에서 20만원 내에서 지급(지역사랑 상품권)